

금융투자업규정 (개정)

1 요청사유 (자산운용과, 2023.4.18.)

- (개정 내용) 외화MMF의 해외 신용평가등급을 국내 신용평가등급으로 전환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의 기준을 별도 기준으로 정비하기 위해 동 기준의 근거조문인 금융투자업규정 문구를 정비
 - 외화MMF 제도는 이미 도입('22.8월)되어 상품 출시 및 운용을 위해 동 조항의 개정을 통해 장단기 신용평가등급 전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려는 것으로
 - 새로운 규제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입법내용의 성질상 위 규정 개정의 사전예고 기간을 기존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

2 검토 내용

- 동 개정내용은 이미 도입된 외화 MMF 제도의 시행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 전환기준을 별도 기준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, 입법내용의 성질상 사전예고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
 - ※ '금융위 법제업무 운영규정' 제20조 등에 따라 금융위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사전 예고가 원칙이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, 생략·단축 가능(동 규정 제20조제3항)

3 처리 의견

- 사전예고 기간 : '23.4.19일 ~ 4.29일 (10일간)